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2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2.

발 의 자 : 이정문 · 이연희 · 문진석
이성윤 · 김남근 · 한민수
이학영 · 안태준 · 김현정
김남희 · 강준현 · 이인영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연금 비대상 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업·창업 촉진을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.

군인은 현재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이나, 군 인사체계에 의한 비자발적 조기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고용주인 국가의 책무임.

그러나 현행법상 5년 미만 장교·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,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.

이에 5년 미만 장교·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‘단기복무 제대군인’으로 정의하고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조제1호제4호 신설 및 제18조의2).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“의무복무 제대군인”이란”을 ““의무복무 제대군인”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”로 한다.

4. “단기복무 제대군인”이란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, 장교·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.

제18조의2제1항 본문 중 “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”을 “단기복무 제대군인,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(이하 이 조에서 “단·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”을 “단·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”으로, “6개월간”을 “단기복무 제대군인은 6개월간,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7개월간,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8개월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”을 “단·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”으로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①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4. “ <u>단기복무 제대군인</u> ”이란 5 <u>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,</u> <u>장교·준사관 또는 부사관으</u> <u>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.</u>
4. “ <u>의무복무 제대군인</u> ”이란 「병역법」, 「군인사법」 또 는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5 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, 보충 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 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.	5. “ <u>의무복무 제대군인</u> ”이란 제 <u>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</u> <u>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8조의2(전직지원금) ① 국가는 <u>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</u> 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 지원금을 지급한다. 다만, <u>중기</u> <u>복무 제대군인에게</u> 지급하는	제18조의2(전직지원금) ① ----- -- <u>단기복무 제대군인, 중기복</u> <u>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</u> <u>군인(이하 이 조에서 “단·중</u> <u>·장기복무 제대군인”이라 한</u> <u>다)</u> -----

